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

---

##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정비 · 운영 계획**

---

**2025. 11.**

**마 포 구**  
(새마포담당관)



---

<b>01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b>	<b>1</b>
위원회 운영현황 개요	2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4
<b>02 2026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계획</b>	<b>14</b>
위원회 정비계획	14
위원회 운영계획	17
* 불임 마포구 위원회 현황	19

작성기준일: 2025. 10. 31.

#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및 2026년도 위원회 운영·정비 계획

01

## 2025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3개

위원회 개수

2025. 10. 31. 기준

1,696명

위원회 위원 수

2025. 10. 31. 기준

417백만 원

예산 편성액

2025년 편성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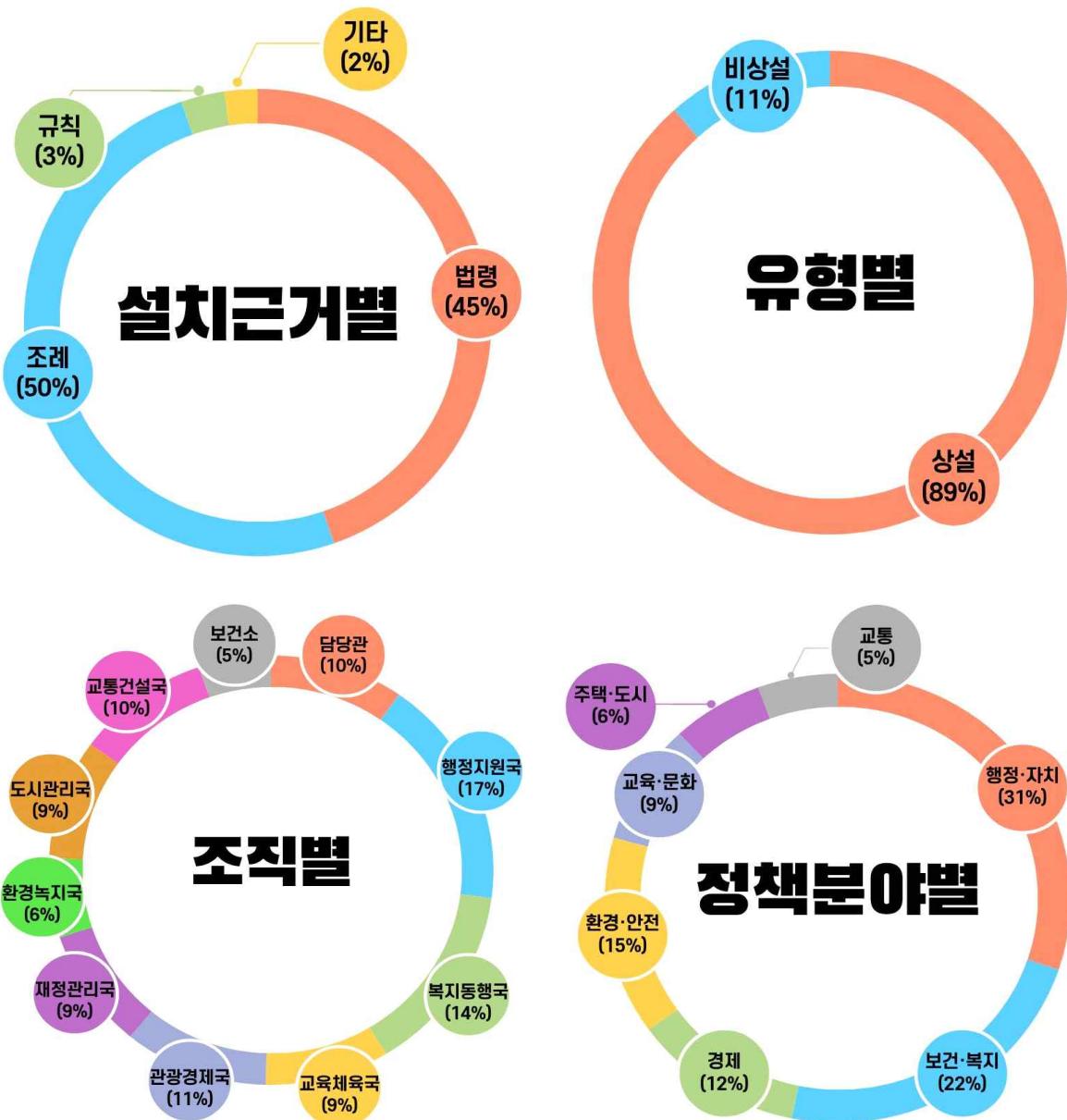
3회

평균 회의 개최 횟수

2025. 10. 31. 기준

# 위원회 운영현황 개요

## I 분류별 위원회 현황



### • 설치근거

\* 단위\_ 개

총계	법령	조례	규칙	기타 (지침·규정 등)
133	61	66	4	2
	45.9%	49.6%	3.0%	1.5%

### • 유형별

\* 단위\_ 개

총계	상설	비상설
133	117	16
	88%	12%

### • 정책분야별

\* 단위\_ 개

총계	행정·재정/ 자치·협력	보건·복지/ 가족·여성	경제	환경/ 안전	교육·문화/ 관광	주택/ 도시계획	교통
133	43	27	11	13	14	12	13
	32.3%	20.3%	8.3%	9.8%	10.5%	9.0%	9.8%

### • 조직별<sup>1)</sup>

\* 단위\_ 개

총계	담당관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교육체육국	관광경제국	재정관리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133	13	23*	19	12	14	12	8	12	13	7
	9.8%	17.3%	14.3%	9.0%	10.5%	9.0%	6.0%	9.0%	9.8%	5.3%

\* 동별 상생위원회는 행정지원국에 포함

1) 조직 구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783호)」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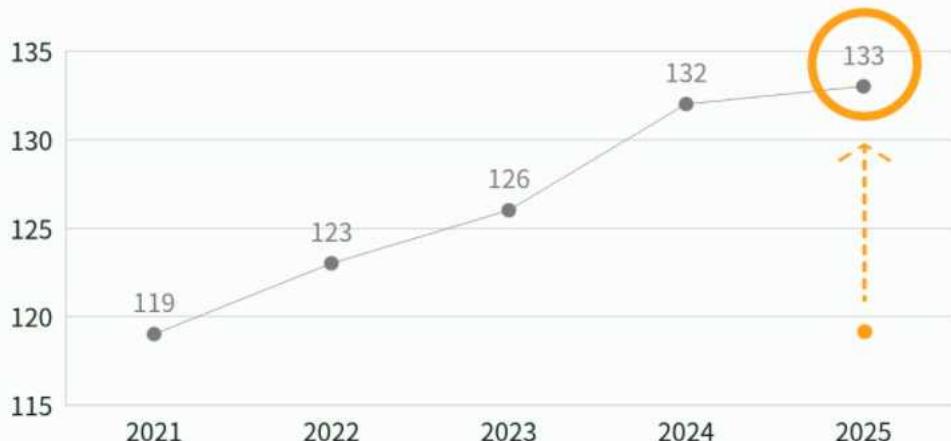
## 위원회 운영실태 분석

### | 위원회 현황

마포구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구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130조).

2025년 10월 말 기준, 마포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133개로 전년 대비 1개가 늘었고, 행정 범위의 확대 및 주민참여 욕구 반영에 따라 연도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위원회 증감 현황



## • 연도별 현황

\* 단위\_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원회 수	119	123	126	132	133
증감	+6	+4	+3	+6	+1

2025년 10월 말 기준 신설된 위원회는 2개로 이를 설치 근거별로 분류하면 법령 근거가 1개, 조례 근거 1개이고, 폐지된 위원회는 1개로 조례 폐지임.

## • 2025년도 신설 위원회: 2개

\* 단위\_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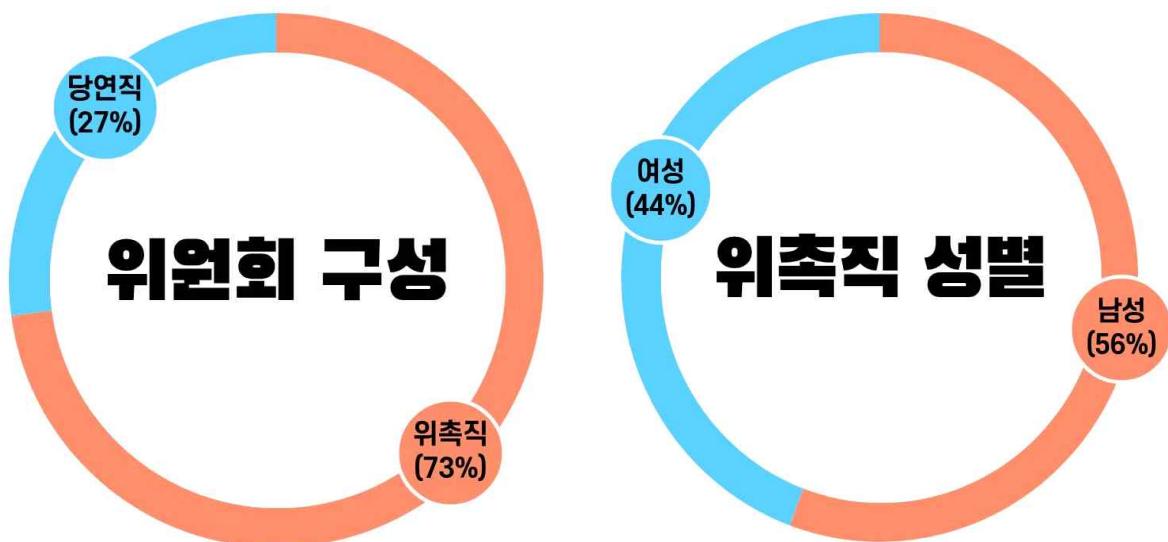
설치 근거	법령 근거(1)	조례 근거(1)
위원회 명 (근거법)	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청년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위원회는 입법방침 수립 전 위원회 설치 필요성, 수행 기능, 안건 발생 가능성 등을 총괄부서(새마포담당관)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가 운영 중이며(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sup>2)</sup>,

개별 위원회 특성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거나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아닌 위원회 존속기한 검토 또는 기존 위원회와 유사한 경우 통합·구성하거나 소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증설을 관리하고 있음.

2) 제7조(사전협의)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 신설 사전검토 요청서 (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 및 제8조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 위원구성 현황



위원회 참여 인사의 다양화로 외부 민간위원(위촉직)은 마포구 전체 위원구성의 72.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부위원(당연직)은 27.1%임.

### • 위원회 구성

\* 단위\_ 명

총계	당연직	위촉직
1,696	460	1,236
	27.1%	72.9%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44.3%(548명)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법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다만 위원회별 성별 60% 미만 기준 준수 여부를 보면 특정 성별 미충족 위원회가 일부 존재하여 향후 정비가 필요함(위촉위원 3명 이하 위원회 제외).

### • 위촉위원 성별 현황

\* 단위\_명

총계	남성	여성
1,236	688 55.7%	548 44.3%

한편, 2025년 10월 말 기준 **6년을 초과하는 연임 위원 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5명으로 근거 규정(「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에 의거 예외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개정 2023. 4. 20.]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업무 담당국장·보건 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명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 위촉위원(구의원 제외) 중복위촉 현황

\* 단위\_명

중복 위원회 수	2개	3개
위원 수	130	95

또한 2025년 10월 말 기준 위촉직 위원의 중복위촉 현황을 보면, 2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130명, 3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95명임.

3)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해촉 후 비위촉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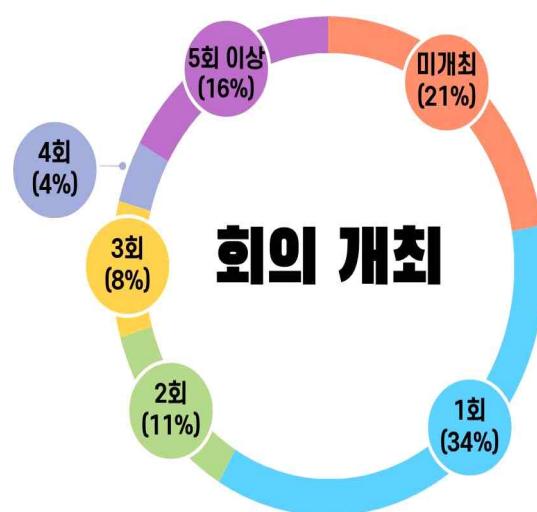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 I 위원회 개최 현황

마포구 133개의 위원회가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개최한 회의 수는 총 397회로, 위원회당 평균 개최 수는 약 3회로 나타남.

- 2025년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2025. 1. 1. ~ 10. 31. 기간 중)

총 회의 개최 횟수	평균 개최 횟수(위원회별)
397회	3회



1회 개최한 위원회는 45개(33.8%)이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위원회는 31개(23.4%)임. 이 중 5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21개(15.8%)임.

비상설 위원회 제외한 미개최 위원회는 28개(21%)이며, 3년 이상 장기 미개최 위원회는 해당부서와 협의·권고를 통해 활성화, 비상설화, 폐지, 통·폐합, 존속 기한 추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회의 개최 횟수별 위원회 수

위원회수	회의 횟수	* 단위_ 개							
		미개최*	1회	2회	3회	4회	5~9회	10~19회	20~45회
133	28**	45	15	11	5	10	9	2	
	21.0%	33.8%	11.3%	8.3%	3.8%	7.5%	6.8%	1.5%	

\* 미개최 위원회 중 비상설 위원회 8개(6.0%) 제외

\*\* 28개 위원회 중 법령·조례상 강행 22개(78.6%), 법령·조례상 임의 5개(17.9%), 기타 1개(3.5%)

• 위원회 평균 회의 개최 횟수 현황(2023~2025)

연도별 분류	2023년			2024년			2025년*			* 단위_회
	합계	서면	대면	합계	서면	대면	합계	서면	대면	
개최 횟수	403	231	172	485	241	244	397	195	202	
비율	100%	57.3%	42.7%	100%	49.7%	50.3%	100%	49.1%	50.9%	

\* 2025년 개최 횟수는 10. 31. 기준

2023년 대면 회의 비율은 코로나 여파로 42.7%, 2024·2025년 대면 회의 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위원회 총괄관리부서(새마포담당관)에서 대면회의 안내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마포구 홈페이지 내 회의록 게시를 안내하고 있음.

## I 위원회 정비 현황

- 대상: 3년 이상(22~24년) 미개최 10개 위원회(법령 8, 조례 2)

구분	위원회명	강행/임의 여부	설치근거
3년 이상 미개최 (10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강행	조례
	유통업상생 발전협의회	강행	법령
	농지위원회	강행	법령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강행	법령
	공통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강행	법령
	경계결정위원회	강행	법령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강행	법령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강행	법령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임의	조례
	지적재조사위원회	임의	법령

\* 법령·조례상 강행설치 위원회 8개, 임의설치 위원회 2개

우선 정비대상인 법령·조례상 임의 설치 위원회 중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는 공익 신고 접수 건수가 매해 증가 추세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유지.

또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상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12~'30년 동안 추진하는 한시적 국가사업이고 전국 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지.

- 2024년 위원회 정비 추진 실적

연번	위원회명	정비 현황	비고
1	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12. 20. 회의 개최
2	사회적경제위원회	비상설화	12. 26. 규칙 개정
3	거리가게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폐지	12. 26. 조례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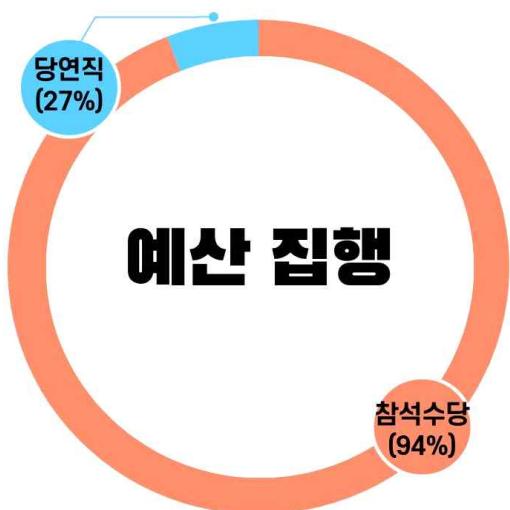
24년 정비 위원회는 총 3개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통해 활성화되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회의 개최.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개최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 위원회 운영 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비상설로 전환.

거리가게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로 인해 폐지.

# I 예산 집행 현황

위원회 예산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 총 202백만 원으로, 1개 위원회당 평균 집행 예산은 약 1.5백만 원임.



항목별로 살펴보면, 참석 수당 등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예산 집행 액의 94%(190백만 원)이며,

위원회 관련 인쇄비, 소모품비 등을 합한 회의 운영 비용은 예산 집행액의 6%(12백만 원)로 나타남.

## • 위원회 예산 집행

\* 단위\_ 백만 원

총액	위원회에게 지급되는 비용	회의 운영 비용
	참석수당 등	인쇄비, 소모품비 등
202	190	12

25년 위원회 예산 집행액은 190백만 원으로 작년 동월(136백만 원) 대비 48.5% 증가했는데 이는 올해부터 증가한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 기인한 것으로, 2025년 참석 수당은 최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서면 심의수당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되어 총액이 상승함.

# I 위원회 조례 개정

2025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기존 위원회 운영상 미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 등을 반영함.

## • 위원회 구성 개선 사항

- 위원 위촉 시 소관부서 장의 새마포담당관 사전협의 및 위촉 후 명단의 새마포담당관 통보 의무화
-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위촉할 시 근거법 명시 통한 관리 강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5. 7. 10.]

제9조(위원회의 구성)

-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위촉 후에는 그 명단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관련 위원의 회피 규정 의무화

- 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 발생 시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회피 사항 임의 규정에서 강행 규정으로 강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5. 7. 10.]

제11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 위원회 운영현황의 구의회 보고 명문화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위원회 관리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현황의 마포구의회 보고 명문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5. 7. 10.]

### 제14조(위원회 관리 및 정비)

-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회의개최 실적
  -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 위원회의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
-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받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운영 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 현황을 작성하고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위원회 존속기한 명문화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에 의거, 위원회 정비 효율성 증대를 위한 존속기한 조항 신설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025.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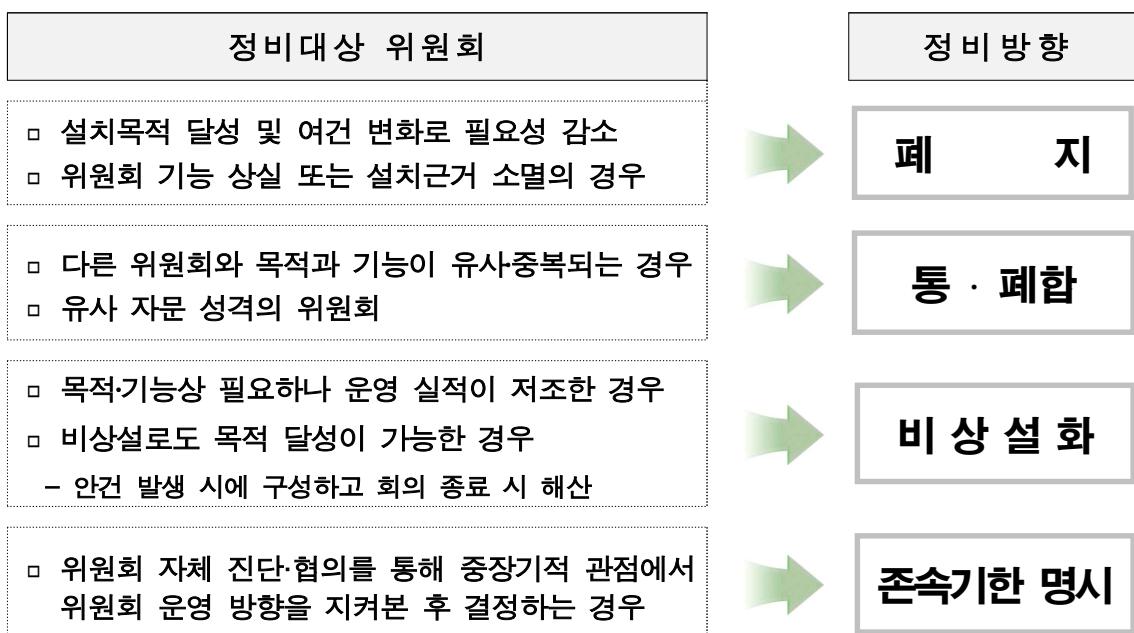
### 제1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 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정비계획

### I 정비방향

- 정비대상: 3년(23~25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 정비기준
  - 위원회 정비·활성화 대상은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로 법령·조례상 **임의규정 위원회 우선 정비**.
  - 단, 강행 규정 위원회도 법령개정 건의 등을 통해 정비 방안 검토 및 위원회 성격에 따라 자체진단 통해 활성화 등 대안 모색



# I 구체적인 정비방법

## ■ 폐지

### - (정비대상) 설치목적 달성 또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목적달성, 기능변경, 행정여건 변화로 인해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심의·자문 안건 발굴이 가능한 경우 위원회 운영 활성화 추진

### - (정비방법) 위원회 관련 조례개정 및 법령개정 건의 등

- (법령상 의무설치) 해당부처에 법령 개정 및 폐지 건의
- (법령상 임의설치) 관련 조례의 개정 또는 방침으로 폐지
- (조례상 의무/임의설치) 관련 조례 개정

## ■ 통폐합

### - (정비대상) 기능 유사·중복 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경우
- 기능은 다르나 심의대상이 동일하여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 법령에 위원회 설치근거 및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통합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통합 불가

### - (정비방법) 위원회별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 (의무설치 위원회에 통합)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 의무설치 위원회 관련 조례상 기능 보강 및 통합 관련 규정 신설
- (임의·조례위원회 간 통합) 조례에 통합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 (정비유형) 단순 통폐합 또는 통합 후 분과위원회로 편제

- 위원회 간 단순 통폐합을 원칙으로 함
- 독자적 심의 필요로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

## ■ 비상설화

- (정비대상) 안건발생 빈도가 적어 비상설로도 목적달성이 가능한 위원회
- (정비방법) 비상설화 규정 마련

<예시> ‘마포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사례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④ (생략)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개정 전과 같음) ②~④ (개정 전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 ■ 존속기한 명시

- (정비대상) 존속기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한 후 판단을 내려야 하는 위원회
  - 위원회 운영상 즉각적인 비상설화, 폐지 등이 어려운 경우
- (정비방법)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목적달성을 위한 기간 설정

### 최근 5년간 정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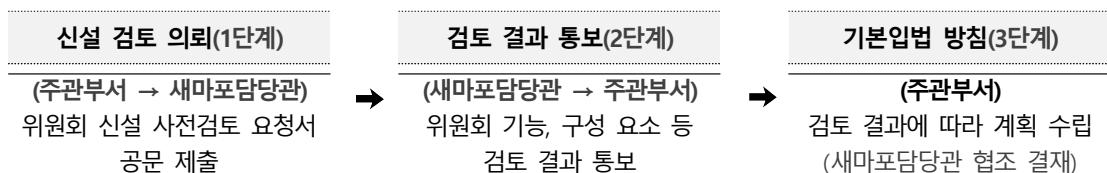
정비구분	정비내용 (2021~2025)
폐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공유토지분할위원회</li><li>▪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li><li>▪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li><li>▪ 거리가게자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li><li>▪ 정보화전략위원회</li><li>▪ 조직관리위원회</li><li>▪ 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li></ul>
통폐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강생활실천협의회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통폐합</li></ul>
비상설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도시농업위원회</li><li>▪ 사회적경제위원회</li><li>▪ 상징물관리위원회</li></ul>
법령개정건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정신건강심의위원회</li><li>▪ 농지위원회</li></ul>

## 운영 계획

# I 운영 계획

### ① 위원회 신설 시 사전검토 및 존속기한 명시

- 위원회 수요 발생 시 기존 위원회 활용 가능 여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자체 진단 후 새마포담당관과 사전협의 절차 필수 진행



-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 존속기한 명시
- 개별 조례 제·개정 시, 기존 위원회 운영 실적, 행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존속 여부 판단
- 유사 중복 위원회 통폐합을 비롯해 장기간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 ② 초과 위촉 · 연임 제한 및 특정 성별 초과 관리 등 위원의 관리 통해 위원회의 다양성 · 형평성 제고

- 위원회 조례개정으로 위원 위촉 후 명단 통보 의무화하여 관리 강화
- 위원 위촉 중복 조회 시 「양성평등기본법」 의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초과 여부 회신하여 성별 구성 준수 철저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위촉계획 방침 시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검토 결과’ 명시

#### ※ 중복위촉 및 연임제한 예외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 **③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회피 규정 강화로 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

-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 개최 시, 위원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와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도록 의무화 강화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 통해 청렴한 위원회 운영 및 구민 알권리 보장**

- 마포구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의거, 회의록 공개원칙을 명시하고 공문을 통해 구 홈페이지에 회의록 등록을 안내하는 등 비공개 자료를 제외한 자료 공개 의무화 강화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시행 2023. 1. 1.]

- 제정일자: 2022. 10. 20.
- 제정목적: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보존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투명행정 구현
- 공개내용: 일시, 장소, 안건, 발언내용, 심의·의결 내용,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항 등

---

## **불임**

**마포구 위원회 현황**(2025. 10. 31. 기준)

## 마포구 위원회 현황(133개)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유형	설치근거	설치 근거 법령 (최상위)	설치일자	설치목적
1	새마포담당관	제안심사위원회	상설	조례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법	2007-07-26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채택 제안의 등급 결정 등을 심사
2	새마포담당관	업무평가위원회	비상설	법령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	2007-04-30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여 평가
3	새마포담당관	직무발명보상 심의위원회	비상설	조례	발명진흥법	2016-07-26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4	새마포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	상설	법령	행정규제기본법	1998-11-27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의 향상 도모
5	새마포담당관	마포미래성장 자문단	상설	조례	지방자치법	2018-09-20	구정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6	새마포담당관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2023-10-19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의
7	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 위원회	상설	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1993-08-19	재산등록 사항 및 취업심사 등 공직윤리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8	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비상설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 률 34조	2007-08-02	장기 미해결, 반복민원 등을 심의· 조정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제시
9	감사담당관	갈등관리위원회	상설	조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2019-12-24	마포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10	감사담당관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상설	조례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1-01-01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 심의
11	감사담당관	청원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청원법 제8조 청원법시행령 제3조	2023-01-01	공개청원 공개여부 등 청원에 관한 사항 심의
12	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	상설	조례	마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24-07-1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심의
13	감사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5 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2025-07-10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
14	행정지원과	인사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1988-05-01	공무원 총원계획 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승진·전보임용 심의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15	행정지원과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상설	조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13-11-11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관리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16	행정지원과	마포구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비상설	기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국외출장 규정	1994.03.31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
17	자치행정과	마포구협치회의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	2019-10-01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마포구협치회의를 설치·운영
18	자치행정과	주민투표청구심 의회	비상설	조례	주민투표법	2012-05-23	마포구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
19	자치행정과	구민상 심사위원회	비상설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상 규칙	1992-08-03	마포구 구민상 후보자 심사
20	자치행정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비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 례	2001-10-20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
21	자치행정과	살기좋은마을 만들기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4조	2012-09-27	마을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
22	자치행정과	기부심사위원회	상설	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5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2007-05-17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심의
23	자치행정과	지명위원회	상설	법령	공간정보의구축 및 광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1988-05-01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
24	자치행정과	공유촉진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제7조	2015-03-26	공유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5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비상설	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023-01-25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
26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람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2023-10-01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유형	설치 근거	설치 근거 법령 (최상위)	설치일자	설치목적
27	홍보미디어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 6.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자문
28	홍보미디어과	상징물관리 위원회	비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2018-10-01	상징물 가치의 제고 및 효율적 관리
29	구민안전과	안전관리위원회	상설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2005-06-15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30	구민안전과	소방시설설치 지원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19-04-01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 상자 적격 여부·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심 의
31	구민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999. 1.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 의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
32	구민안전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 제센터 운영조례	2019-03-04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
33	구민안전과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상설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시행령제73조 의5	2024-08-08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34	민원여권과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07-06-22	기록물 폐기, 보류, 보존기간 변경 등에 대한 사항 평가 심의
35	민원여권과	정보공개심의회	상설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 제12 조	2004. 10.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령 에 의한 이의신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36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상설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 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2005-10-25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37	복지정책과	저소득주민거 안정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9-03-2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38	실뿌리복지과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의료급여법 제6조	1992-03-01	의료급여사업의 중요사항 심의·의결
39	실뿌리복지과	생활보장위원회	상설	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2015-04-2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40	어르신동행과	장기요양기관지정 심사위원회	상설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2020-05-22	장기요양기관의 신규설치 신고시, 시설 설비·인력기준 및 급여제공이력, 운영계 획등에 대한 적합여부 심사
41	어르신동행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상설	조례	노인복지법	2021-02-15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4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위원회	상설	조례	장애인복지법 제13 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2014-03-07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4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수 급자격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2011-09-01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인정에 관한 심의
44	가족정책과	양성평등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	2013.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조 정
45	가족정책과	성별영향분석 평가위원회	상설	조례	성별영향평가법	2017. 5.	성별영향평가 사업 선정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46	가족정책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2조	2005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47	가족정책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 안전에 관한 조례 제7조	2009-11-25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48	가족정책과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아동복지법 제12조	2016-12-13	요보호 아동의 보호관리 등에 대한 논의 및 심의
49	가족정책과	드림스타트운영 위원회	상설	기타	아동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37조	2015-12-01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 안 등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
50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위원회	상설	조례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2005-08-29	아동 급식지원 관련 전반에 대한 선정 및 결정
51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1-11-29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활 성화
52	가족정책과	아동위원회	상설	조례	아동복지법	1994-10-04	지역내 아동의 생활 및 가정환경을 파악 하고 지원하여 아동복지에 기여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유형	설치근거	설치 근거 법령 (최상위)	설치일자	설치목적
53	가족정책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상설	조례	아동복지법 제4조	2020-11-17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54	가족정책과	마포구지역돌봄 협의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 봄 지원에 관한 조례	2020-11-30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 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
55	교육청소년과	교육발전자문 위원회	상설	조례	지방자치법	2013-02-14	마포구 교육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제언 과 의견 자문
56	교육청소년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2003-03-24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 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57	교육청소년과	급식지원심의 위원회	상설	법령	학교급식법 제5조 제 3항	2011-02-08	우리구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58	교육청소년과	학교폭력대책지역 협의회	상설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2	2012-03-29	지역단위 및 참여기관·단체별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및 유관기관, 단체간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 협의
59	교육청소년과	미래교육지구 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	2024-05-10	교육 현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미래 연령 강화 사업 추진 등 마포구 미래교육지구의 체계적 운영
60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육성 위원회	상설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1조	1996-10-07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항 심의
6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심의 위원회	상설	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2010-03-01	마포구 관내 위기청소년 관련 자원의 연 계가 용이하도록 학계·의료·교육·고 용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함.
62	평생학습과	평생교육협의회	상설	법령	평생교육법 제14조	2007-06-05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함
63	평생학습과	마포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	상설	법령	도서관법 제34조	2018-03-30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도모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
64	평생학습과	마포구립도서관 수탁자선정위원회	비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에 관한 조례	2019-03-28	공정하고 투명한 도서관 위탁운영체 선정
65	보육정책과	보육정책위원회	상설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	2001-06-01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보육계획 등 을 심의
66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협의회	상설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2023-02-01	체육진흥 계획 수립 및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등 협의
67	관광정책과	관광산업활성화 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제23조	2011-04-13	마포구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기하기 위함
68	경제진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지방자치법, 지역중 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3-07-24	기금의 용자대상자 선정과 용자액의 결정,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
69	경제진흥과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	상설	조례	중소기업기본법	2007-07-01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70	경제진흥과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	상설	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7 조의5제1항, 유통산 업발전법 시행규칙	2011-07-22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업체의 상생발전
71	경제진흥과	동물복지위원회	상설	조례	동물보호법	2022-04-01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
72	경제진흥과	도시농업위원회	비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제6 조	2011-12-30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보급에 관한 사항
73	경제진흥과	농지위원회	상설	법령	농지법 제44조	2022-08-26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74	문화예술과	마포출판문화진흥 센터운영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2020-06-23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 평가 등 심의 의결
75	문화예술과	축제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2021-11-12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축제 전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76	고용협력과	일자리창출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일 자리창출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0-11-11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자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77	고용협력과	생활임금심의 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2015-09-21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유형	설치 근거	설치 근거 법령 (최상위)	설치일자	설치목적
78	고용협력과	사회적경제 위원회	비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2019-07-0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79	고용협력과	물가대책위원회	상설	조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1994-05-04	물가 및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80	고용협력과	청년정책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 기본 조례	2025-09-29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81	예산정책과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2011-09-2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82	예산정책과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	1992-08-0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등
83	예산정책과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1999-08-28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예방과 예산편성 전 타당성·필요성 등 심사
84	예산정책과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	2006-10-12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함
85	예산정책과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015-02-26	지방보조금법 제26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
86	예산정책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2015-09-18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
87	예산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2023-05-1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88	재무과	계약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2006-11-23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10억원 이상)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 체결방법 등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 심의
89	재무과	공유재산심의회	상설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2006-05-18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함
90	재무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	2019-07-11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91	징수과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	상설	조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2012-12-01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 심의
92	재산세과	지방세심의 위원회	상설	법령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제1항	2011-02-25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
93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3조의2	1991-04-08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 지원
94	깨끗한마포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상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을 처리 등)제8항제2호	2013-01-2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및 평가계획을 심의·의결
95	깨끗한마포과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성과평가 위원회	상설	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2024-05-02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성과보고서 평가
96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994-12-21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선별 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
97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6-02-02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조성되는 재원으로 우리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
98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성과 평가위원회	상설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3항(음식물류폐기물을 발생억제 계획의 수립 등)	2016-03-2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평가
99	맑은환경과	환경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제22조	2010-12-14	마포구의 환경보전시책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구민이 참여
100	공원녹지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상설	법령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2013-07-10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함.
101	주택상생과	도시분쟁조정 위원회	상설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2011-06-01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분쟁 발생시 심사·조정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유형	설치근거	설치 근거 법령 (최상위)	설치일자	설치목적
102	주택상생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공동주택 관리법	2006. 3.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의결
103	주택상생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상설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2016. 1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10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상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113 조/시행령 제112조	1992-10-07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된 구 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한 자문 또는 심의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105	도시계획과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비상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30 조	2015-07-01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재위임된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지구단위계 획(안)에 대한 심의
106	건축지원과	건축위원회	상설	법령	건축법 제4조	1993. 4.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 을 조사·심의
107	건축지원과	공공디자인진흥 위원회	상설	조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20-12-01	마포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
108	건축지원과	피난구조설비설치 지원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 난구조설비 설치 지 원 조례 제9조	2019. 11.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109	부동산정보과	주소정보위원회	상설	법령	도로명주소법 제29 조	2007-11-27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 직권 으로 부여·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주소정보 활용에 관 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110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상설	법령	부동산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25조	1989-11-13	토지 및 주택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 심 의·의결
111	부동산정보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상설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014-10-01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
112	부동산정보과	경계결정위원회	상설	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2014-10-01	경계설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 심의 의결
113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00-07-15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경감심의
114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2023-10-30	교통영향평가서 심의·의결, 마포구 교통 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 심의·의결
115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2009-11-02	교통안전법 제17조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마포구 교통안 전기본계획의 수립·위원회 및 위원회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및 주요 정책 결정
116	교통행정과	버스노선조정 위원회	비상설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 원회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999-04-23	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에 대하여 서울특 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서울특별시마 포구(이하 "구"라한다)관할구역내의 마을 버스운송사업 등록 등 한정면허 사무처 리와 관련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117	교통행정과	서부광역철도건설 사업추진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별전을 위한 서 울 서부지역 광역철 도 건설사업 추진 지 원 조례 제3조	2017-01-01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조례에 따라 추 진위원회 위원회를 위촉하여 서부지역 광 역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마포 구간의 역사 증설 등 효과적 대응
118	주차관리과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 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05-18	교통민원 신고사항을公正하게 처리
119	주차관리과	주·정차위반의견 진술심의위원회	상설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6-04-01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 정성 확보
120	보행행정과	옥외광고심의 위원회	상설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7조	1991-01-08	미관풍치, 미풍양속유지 및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121	보행행정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 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2	2009-06-11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122	보행행정과	미지급용지보상 심의위원회	상설	규칙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6조	2003. 1.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방법 및 그 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함

연번	소관부서	위원회명	유형	설치근거	설치 근거 법령 (최상위)	설치일자	설치목적
123	도로개선과	도로관리심의회	상설	법령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1997-01-15	도로굴착사업 시행시기 심의, 주요지하 시설물 안전대책,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안전대책
124	도로개선과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 치 조례 제7조	1997-03-15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주요항목 지출금 액의 변경,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그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125	도로개선과	기술자문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98-09-30	복잡하고 대형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진단, 건설공사의 설계시행 등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의 체계적인 기술적 자문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126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상설	법령	지역보건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2022-11-01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
127	보건행정과	정신건강심의 위원회	상설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 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3조	2009-03-23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 및 자문
128	보건행정과	자살예방및생명 존중위원회	비상설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 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2013-09-12	자살예방 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 업 자문 조언
129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	2001-02-28	식품진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130	의약과	아동치과치료지원 사업지역협의체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생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관 한 조례 제10조	2013-03-12	지역사회의 보건자원을 확보하고 아동의 다양한 보건문제를 협의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아동의 구강건강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
131	의약과	안전도시만들기 위원회	비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제8조	2005. 11.	마포구민의 손상예방 활동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32	의약과	마포구재활협의체	상설	법령	장애인 복지법 32조 의 7	2020-03-16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사례관리를 통한 통 합적 서비스 제공
133	각 동	동별 상생위원회	상설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민관상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01-01	

MAPΩ  
마포구